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8나65451 판결 [점유회수청구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 선고 2018나65451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7 선고 2017가단8160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F(개명전: A)

피고, 피항소인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바른

담당변호사 최문기

변론 종결2019. 5. 2.

판결 선고2019. 5. 30.

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. 9. 7. 선고 2017가단8160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송영환

판사남성우

판사류희현